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6. 1.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14.)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휴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안 제17조 1항).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6호 및 7호).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제4호).
-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 개정근거

-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

□ 조 례 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덧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제1항중“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를“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로 하며 제2항중“당직근무에”를“당직 및 비상근무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중“근무시간”을“근무시간등”으로 하고, 동조중“근무시간을”을“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의 연가일수란중“3일”을“4일”로,“8일”을“10일”로,“11일”을“13일”로,“14일”을“16일”로,“17일”을“19일”로,“20일”을“22일”로 하고, 근속기간란중“5년이상”을“5년이상 6년미만”으로 하며, 동표의 근속기간란에“6년이상”을, 연가일수란에“23일”을 각각 신설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제1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고,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하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제22조제6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교육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본문중 “공무원복무규정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